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3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3. 31

다. 상 정 일 자 : 2005. 4. 15

(제12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부위원회 제3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안태호

나. 제안사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 및 신고 포상금지급 금액 차등화(안 제8조)
-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 50만원으로 하향조정(월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안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용태)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전라남도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서 법령 및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 의결”

7. 붙임 :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 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신고포상금의 범위”를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으로 한다.

동조 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나,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자 1인당 포상금 합계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월 한도액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①----- ----- -----원칙으로 하나,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생략)</p> <p>1.(생략) 2.(생략) 3.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p> <p>4.(생략) 5.(생략) 6.(생략) 7.(생략)</p>	<p>제15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신고자 1인당 포상금 합계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 한도액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p> <p>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p>

(현행) 【 별표1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3항)	300	300	300	-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10	30	50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의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의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의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의 사업자	10	30	5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4.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개정) 【 별표1 】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3항)	300	300	300	-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3	5	10	1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위반 (이후)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 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 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 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4.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